

복식문화학회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연구윤리규정

제정일: 2008년 4월 12일
최근 개정일: 2021년 8월 11일

서문

복식문화학회 정회원의 역할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의류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개인과 사회의 공익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본 윤리규정은 복식문화학회 회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 윤리, 연구 관련 윤리, 심사 관련 윤리 규정으로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회 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회원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기초 위에서 활동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를 인식할 의무가 있으며, 또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게 하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1장 회원의 일반적 윤리

제 1조 회원의 기본적 책무

1. 본 학회 회원은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본 학회 회원은 학문연구, 교육, 평가의 제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학회 회원은 자신의 연구가 사회와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
4. 본 학회 회원은 연구결과와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본 학회 회원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아울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제 2조 전문성

1. 본 학회 회원은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본 학회 회원은 전문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조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

1. 본 학회 회원은 동료 회원을 존중하고, 동료 회원의 업무활동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않는다.
2. 본 학회 회원은 성실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다른 분야의 종사자와 협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 2장 회원의 연구 관련 윤리

제 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본 학회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4. 생명윤리규정
 - 1) 회원은 생명체를 대상으로 연구수행 시 대상을 존중하여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2) 연구대상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대상자의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비밀로 한다.
 - 3) 회원은 연구대상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얻어야 한다.
 - 4) 취약한 조건이나 환경의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수행 시 회원은 연구참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 5)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계획하는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임상시험심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도록 권고한다. IRB 승인을 얻은 연구를 출판 시 회원은 IRB 승인을 득한 연구임을 밝힌다.
5. 성과 젠더 특성
 - 1)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성(sex, 생물학적 요인)과 젠더(gender, 사회문화적 요인)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술한다.
 - 2) 연구참여자별 성별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연구결과 해석에 반영한다.
 -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제 2조 연구 관련 부정행위

1. 본 학회 회원의 연구자는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기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것이며, '변조'는 연구과정이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는 것을 뜻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논문에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2. 본 학회 회원의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등 적절한 출판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미 게재완료된 논문 중 표절 문제가 제기된 논문들은 표절 여부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가 판결될 때까지 학회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 원문보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며, 최종 판정 결과 무혐의로 판결되면 원문보기 서비스를 재개한다.

제 3조 출판 업적 및 저자됨

1. 본 학회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다른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게재하지 않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학회 회원의 연구자는 투고시 논문에 기여한 모든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저자의 추가, 삭제, 저자 순서의 변경을 원할 시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저자의 변경은 참여한 모든 저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하다. 2) 저자의 변경 사유에 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모든 저자의 서명을 받은 후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저자 변경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이루어졌을 경우, 모든 저자가 표기된 논문투고신청서와 연구윤리확약서 및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다시 제출한다. 4) 저자의 변경은 출판 전에만 가능하다.
5. 연구자는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고, ORCID 번호를 제출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6.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학회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되며,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밝혀야 한다.
7. 저자됨의 기준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며,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여자로 한다. (1) 연구의 개념 정립 및 설계, 연구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2)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논문의 중요한 내용을 비판적 시각으로 수정하였다. (3) 논문 투고 전에 최종 투고본을 검토하였다. (4) 논문 전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질 것을 동의하였다.

제 3장 심사 관련 윤리

제 1조 심사

1. 투고논문을 심사하는 본 학회의 심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의 심사를 기간 내에 완료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심사를 지연하지 않는다.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되며, 심사위원은 사적인 친분관계나 개인적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사한다.
4. 심사자는 투고자 혹은 투고논문과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때, 이를 편집국에 알리고 심사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5. 심사의뢰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나 중복 게재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 심사자는 그 내용을 학회에 알리며, 심사를 거부한다.

제 4장 연구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 1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복식문화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점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1. 본 학회는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 기타 전문가로 구성한다. 회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논문, 보고서 등에 의하여 제기된 연구윤리 사항, 학회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임을 판정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제보자, 피조사자, 관련자 등에게 통지한다.
5.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조 연구윤리위원회와의 협조 및 소명 기회의 보장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복식문화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4조 징계심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복식문화학회 이사회에서의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회원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를 정하며,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학술지 논문 목록을 삭제
2. 학회지에 논문투고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최소 3년 이상)
3. 게재취소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
4.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5. 관계기관의 통보,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6. 기타 조치의 징계

제 6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복식문화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본 연구윤리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international-standards-for-editors-and-authors>)의 규정을 따른다.

복식문화학회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논문심사규정

제정일: 1993년 04월 20일

최근 개정일: 2021년 08월 11일

1. 본 규정은 『복식문화연구』지에 투고할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복식문화연구』지에 투고한 논문은 한 편당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한다.
3.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본 학회 정회원 중 복식문화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학자로서 투고 논문과의 전공일치도, 연구업적, 직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단, 특정분야의 경우 특별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의뢰할 수 있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4.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1) 논문주제의 독창성 2)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구성과 서술의 논리성 5) 학문적 기여도 6) 참고문헌/ 영문초록 양식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1) 심사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검토 후 투고자에게 추가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결과를 편집위원이 승인하였을 때 게재절차를 진행한다.
 - 2)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수정 지시사항에 따라 반드시 수정한 후, 수정된 논문을 「논문 수정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 3) 심사결과, 동일 심사차수에서 2인 이상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최종 판정 결과를 '게재불가'로 한다. 심사위원 1인의 '게재불가' 판정 시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3의 심사자가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최종 판정 결과를 '게재불가'로 한다.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동일 제목과 내용으로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4) 심사결과 투고논문이 '게재가'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 5) 논문의 연구 대상 및 범위가 유사한 논문이 복수로 반복 투고되는 경우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 또는 제3의 유사논문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6) 심사가 진행되는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중복게재 및 표절 의혹을 제시한 경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게재불가' 통보를 할 수 있다.
 - 7)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지시 후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판정하되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4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심사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7. 논문 투고 시부터 게재 전까지의 모든 심사과정은 익명으로 처리하되,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논문 심사 결과 중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9. 논문게재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 중 접수순서와 국·영문 논문, 세부 분야, 급행논문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 문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복식문화학회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편집위원회규정

제정일: 1993년 4월 20일
최근 개정일: 2021년 8월 11일

1. 목적

본 규정은 “복식문화연구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본 학회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회지 발간

복식문화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 명칭은 『복식문화연구(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라 한다.
- 2) 학회지 발간 회수는 1년에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2, 4, 6, 8, 10, 12월의 말 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증보판”을 발행할 수 있다.
- 3)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4) 발행된 학회지의 관리에 관한 권한은 발행인이 갖는다.

3. 편집위원회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회장단과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3) 편집위원 선정은 회장단과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편집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편집위원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 (1)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섬유 및 패션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학자나 전문가로 한다.
 - (2) 편집위원은 최근 섬유 및 패션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
 - (3) 편집위원 선정시 섬유 및 패션관련 다양한 전공분야가 균형있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
 - (4) 편집위원은 지역분포 및 직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편집위원의 주요 업무

- 1) 투고 논문의 심사과정에 대한 관리 및 최종 검토
- 2) 편집관련 규정의 검토, 제정 및 개정
- 3) 편집관련 업무의 계획과 운영 참여
- 4) 기타 학술지 관련 사항

5. 편집위원회 운영

- 1) 편집위원회는 『복식문화연구』 발간을 위해 정기 편집위원회와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임시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 3) 편집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편집위원 과반수 참석과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나 서면/온라인 회의로 개최될 수 있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